

2026년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  
「혁신기업 맞춤형 지원」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

경기도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우수 혁신기업 육성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해 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도내 혁신제품의 공공·민간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2일  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## 1. 사업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경기도내 우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
- 혁신기업의 국내외 판로 다각화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

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명: 「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사업」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공모기간: 2026. 6. 2 ~ 6. 22. ※ 모집 미달인 경우,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
- 사업기간: 협약일 ~ 2026. 12. 31.
- 지원규모: 7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400만원)
- 지원대상: 경기도내 혁신제품 지정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
(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내 소재)

※ 참여자격 제외대상(사업공고일 기준)
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
- 기업이 부도인 경우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(시효소멸자는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해당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에서 동일과제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인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
- 11개 법률\*(2년이내) 범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(기업)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 - \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진동관리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국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
- 선정 후 과거 범위반 또는 신규 범위반 확인시 사업취소·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- 2년 연속(24년, 25년) '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', '경기도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' 참여기업

2.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

□ 지원내용

- 지원분야 내 기업 자율 선택(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)

항 목	세부내용	지원규모
규격추가 (필수신청)	· 혁신(시)제품 규격추가에 소요되는 특허, 인증비용 지원	기업당 4백만원 (부가세, 초과금 기업부담)
판로개척 실증지원	· 국내시범구매 및 수출선도형 해외실증사업에 소요되는 기업 부담금(설치비, 해외인증비 등)에 대한 비용	
지식재산권	· 제품에 대한 지재산권 관련 비용	
컨설팅	· 홍보전략, 국내외 조달시장 등 판로개척을 위한 컨설팅	
해외시장조사	· 해외조달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조사	
인증획득	· 혁신제품의 제품인증 획득 관련 비용	

- 지원금은 선정시 50% 선지급, 결과보고서 접수/검토 후 50% 후지급
- 부가세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소요금액 등은 기업부담
- 기자재와 같은 자산성 물품, 인건비, 항공권, 숙박비 등은 지원 제외

- 수행기간: 협약일 ~ 2026. 12. 31.

□ 유의사항

-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-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3. 신청요령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

- 공고확인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(<https://www.gtp.or.kr>)
- 접수기간: 2026. 6. 2 ~ 6. 22.
-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  - ※ 온라인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(<http://pms.gtp.or.kr>) 사이트접속 → [지원사업 공고] “더보기”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 (해당과일 작성후 업로드)
  - 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  - ※ 온라인 당일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오니 전날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
  - ※ 신청인(신청기업)은 본 공고, 신청서, 서식,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,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(신청기업)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, 서류누락·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(신청기업)에게 있음

□ 제출서류

항 목	비 고
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상품기술서, 사업계획서, 사업비 사용 계획서 각 1부	- 양식 별도 첨부(서식1)
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	- 양식 별도 첨부(서식2)
③ 혁신제품인증서 1부	
④ 사업자등록증 1부	
⑤ 중소기업확인서	- <a href="https://www.smes.go.kr/main/applyCertificatePage">https://www.smes.go.kr/main/applyCertificatePage</a>
⑥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- 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 제출
⑦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약서	- 양식 별도 첨부(서식3)
⑧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기업의 범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서	- 양식 별도 첨부(서식4, 서식5)
⑨ (해당 시) 가점 증빙서류	- 여성기업 확인서, 경기도유망중소기업, 가족친화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사본 제출: 가점부여

- ※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
## 4. 선정평가 기준

### □ 선정평가

#### ○ 평가방식

- 1차 서류검토: 사업 적합성 및 제한요건 등의 적·부 확인  
(1차 서류검토 후 적합 신청기업이 1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평가 진행)
- 2차 선정평가: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회 구성, 서류평가 진행

#### ○ 평가방법 및 기준

- 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사업계획 적정성, 제품/서비스 사업성, 시장성 등 종합평가

평가항목	배점	평가내용
목표 및 사업계획 적정성	30	- 과제의 중요성 및 필요성 - 과제의 최종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- 신청서의 내용과 사업목표의 부합성
제품의 사업성	40	- 대상 제품의 독창성 및 혁신성 - 대상제품의 우수성 - 기초자료조사 및 사전 준비성 등
제품/서비스 시장성 및 성과창출	30	-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, 시장규모 - 목표시장에서의 성과창출 기대 정도 - 목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도
합 계	10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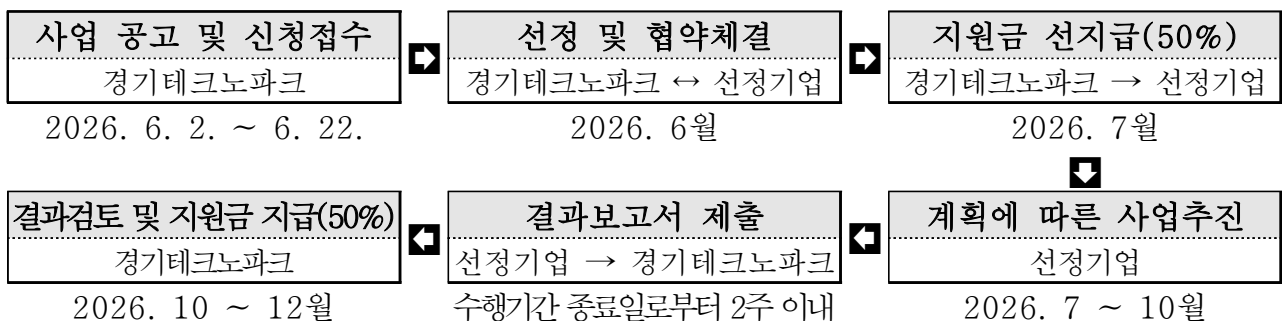
※ 여성기업, 경기도유망중소기업,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증빙서류 제출 시 평가에서 가점(각 2점) 부여

※ 2024년 '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' 수혜기업 확인 시 5점 감점

※ 2024년 '경기도 혁신기업 맞춤형 지원' 선정 이후 중도 포기업체 확인 시 10점 감점

- 위원별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가점/감점을 적용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

## 5. 추진일정(안)



## 6. 문의처

담 당 자	주 소	전 화	이 메 일
강휘호 대리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, 경기테크노파크 4동 317호 기술사업화팀	031-500-3039	hhkang91@gtp.or.kr

[별첨]

적용법률		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	비고
I 공정	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	(소관기관) 공정거래위원회 (서류제출) 홈페이지( <a href="https://case.ftc.go.kr">https://case.ftc.go.kr</a> ) 에서 건별 <b>법위반 사실 확인서</b> 발급 (조 회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·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	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	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,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(서류제출)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(조 회) 고용노동부, 고용노동 지방청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선정기업 일괄조회 (신청자 미제출)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	(소관기관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(조 회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	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, <b>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</b> (조 회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신청 시 제출

- ※ 신청 시 국세,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및 동의서 기반으로 법위반사실 여부 일괄조회
- ※ 미리 신고하지 않은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, 3년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※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(경기테크노파크)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